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 단계평가 운영지침

제정 2022. 03. 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 단계평가지침은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라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 단계평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실시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단계평가에 적용한다.

제2장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제3조(평가단의 구성·운영) ①사업단장은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평가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을 구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가 때 마다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평가후보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제2항의 평가후보단 운영을 위해 운영규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사업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사업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재)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동의한 전문가를 활용해야 한다.

④ 사업단장은 운영규정 제24조 제5항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

1.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2. 제1호의 사람이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서로 다른 두 건의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때 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가 그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는 관계가 되는 경우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4.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과, 학부(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서 등 최하위단위 부서에 같이 소속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제외할 수 있다.
 -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5. 운영규정 제2조 제2항 ‘주무부처’소속 공무원 및 전문기관의 임직원(연구개발과제 기획·분석·평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관리전문가는 제외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단장은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제6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⑥ 사업단장은 단계평가 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 사업의 선정평가에 참여한 사람을 평가단 인원의 50%까지 선정할 수 있다.
 - ⑦ 사업단장은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무부처 소속 공무원 및 전문기관 직원이 평가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⑧ 이 밖에 평가단의 구성방법 및 절차, 평가후보단의 정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제3장 단계평가

- 제4조(단계평가)** ①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를 위해 운영규정 제24조의 절차에 따라 평가계획을 마련하고 운영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단계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각 연구개발과제 책임자는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연구개발 각 단계 종료일 45일 전까지 별지 1의 단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단계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단장은 필요시 정량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정량평가는 연구개발과제별 협약에서 정한 정량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단장은 제2항의 단계보고서를 통해 목표대비 실적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평가단에 제공할 수 있다.
- ⑤ 제3항의 정성평가는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단장은 필요시 발표평가를 서면평가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책임자에게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 ⑥ 사업단장은 제3조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하고 단계보고서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단계평가를 실시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내용 및 과정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3.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4.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5. 연구개발성과와 사업단 목표의 연계 정도
- ⑦ 사업단장은 제6항 제5호의 내용을 평가하기 위해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를 평가단에 제공할 수 있다.
- ⑧ 사업단장은 제3항의 정량 및 정성평가 비율을 정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평가비율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단계평가서에 명시한다.
- ⑨ 평가위원은 제8항의 단계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⑩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결과는 제9항의 단계평가서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제5조(평가결과) ① 사업단장은 제5조의 평가를 실시하고 각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류한다. 다만, 평가에 응하지 아니한 과제는 제4호로 분류할 수 있다.

1. 우수 : 평균점수가 90점 이상인 과제
2. 보통 :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90점 미만 범위내 과제
3. 미흡 : 평균점수가 60점 이상 70점 미만 범위내 과제
4. 극히 불량 :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이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성실수행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에 응하지 아니한 과제’는 단계보고서(제4조 제5항의 서식을 포함)를 제출하지 않거나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과제를 포함한다.

③ 사업단장은 제 1항의 평가결과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에 따른 재평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제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5조 제3항의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단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절차는 이의신청처리 운영지침에 따르며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제3조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③ 재평가를 위한 제2항의 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 재평가 대상 과제의 단계평가(본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을 50%까지 선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재평가는 발표평가 또는 현장평가 중 한 가지 형태로 실시하며 제4조 제3항에 따라 정량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은 별지 2의 1호 서식인 단계평가서(재평가용)를 작성하여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과제의 재평가 평가결과는 제5항의 단계평가서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⑦ 사업단장은 제5조에 따라 재평가 결과를 분류하고 그 결과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후속조치) ① 사업단장은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제5조 제1항에 따라 분류된 결과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계속수행(우수, 보통, 미흡) 평가 과제 : 단계보고서의 보완 및 제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등

2. 중단(극히 불량) : 혁신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협약 해약 및 연구시설·장비의 재배치, 시행령 제 26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운영규정 제31조에 따른 제재처분 전문기관 의뢰 등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단계보고서를 보완하는 경우, 협약당사자간 협약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속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단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가 제3항에 따른 일체의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실을 장관에게 보고한 후 제1항 제2호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사업단장은 운영규정 제24조 제6항에 따라 제5조 및 제6조의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하여야 한다.

⑥ 사업단장은 운영규정 제24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주무부처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별 단계평가결과
 2. (해당시)계속수행(우수, 보통, 미흡) 평가 과제에 대한 조치방안
 3. (해당시)중단(극히 불량) 평가 과제에 대한 조치방안
- ⑦ 제1항 제2호의 중단 과제에 대해 제재처분이 필요한 경우 제재대상 및 조치는 운영규정 제31조에 따른다.

부 칙(2022. 02. 0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총괄부처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운영기준

1. 정의

- 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 :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개별과제의 선정 및 심사 등을 위해 실제로 평가 활동을 수행하는 전문가 집단을 말하며, "평가단"에 참여한 전문가를 "평가위원"이라 함
- 나. 연구개발과제평가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 : 스마트팜다부처 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 개별과제의 평가활동을 위해 전문가 중 경력 및 전문성을 인정받아 별도의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전문가 집단을 말함
- 다.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예비후보(이하 '예비후보'라 한다) : '평가단'을 구성하기 위해 '후보단'으로부터 평가단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구성한 전문가 집단을 말함

2. 구성

가. 연구개발과제평가후보단

-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후보단의 인적사항, 전공, 연구분야, 논문실적 및 평가이력사항 등 정보를 확인 및 관리할 수 있으며, 후보단을 아래 기준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함
 - 가)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나) 해당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다) 대학의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자
- 2) 전문가가 후보단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경력 및 전문성을 확인한 후 후보단으로 지정하여야 함
 - 가) 사업단장은 전문가가 후보단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후보단 신청자 등급조정 회의'의 확인을 거쳐 자격요건을 충족한 전문가를 후보단으로 다음 등급에 따라 지정하여야 함

(1) 1군: 사업정보시스템에서 필수정보(인적사항, 전공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아래의 기준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자

(나) 해당분야 연구개발경력이 7년 이상인 자

(다) 대학에서 해당분야 전임강사로서 2년 이상인 자 또는 조교수 이상인 자

(2) 2군: 사업정보시스템에서 필수정보(인적사항, 전공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아래의 기준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2년 미만인 자

(나) 해당분야 연구개발경력이 7년 미만인 자

(다) 대학에서 해당분야 전임강사로서 2년 미만인 자

(3) 3군: 기존 후보단 중 사업정보시스템에서 필수정보(인적사항, 전공 등)를 확인하기 어려운 전문가

※ 단, 연구개발과제평가후보단의 구성원칙을 충족하는 경우 실무경력 2년을 연구개발경력 1년으로(또는 연구개발경력 1년을 실무경력 2년으로) 갈음하여 후보단 등급 조정 가능

나) 사업단장은 후보단으로 지정된 전문가를 가)의 등급에 따라 전산정보 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함

나.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예비후보

1)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해당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과제의 기술분류를 고려하여 평가단 인원의 5~7배수로 후보단 중에서 예비후보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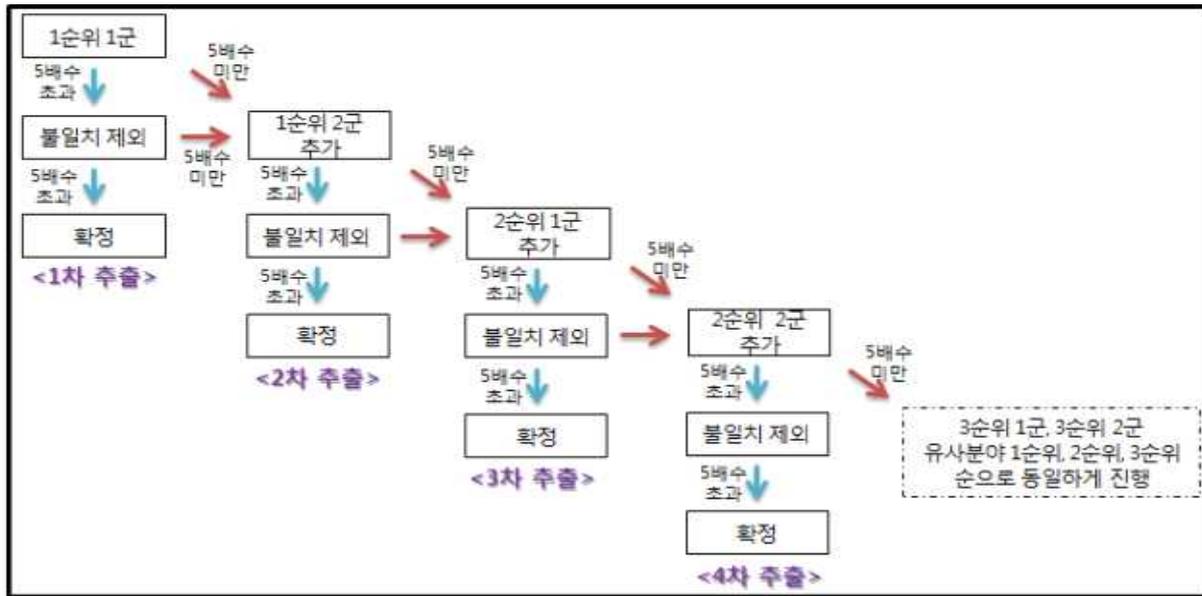
가) 해당 연구과제의 기술분류(소분류)를 1순위 평가분야로 선택한 전문가 중 1군으로 분류된 전문가를 대상으로 예비후보를 구성함

나) 가)에 따라 예비후보를 구성한 결과, 평가단 인원의 5배수 미만일 경우 해당 기술분류(소분류)를 1순위 평가분야로 선택한 전문가 중 2군으로 분류된 전문가를 대상으로 예비후보를 추가·구성

다) 나)항에 따라 예비후보를 구성한 결과가 평가단 인원의 5배수 미만일 경우 차 순위로 해당 기술분야(소분류)의 평가분야에 2순위의 1→2군, 3순위의 1→2군과 같은 순으로 예비후보를 추가·구성

라) 다)에 따라 예비후보를 구성한 결과가 평가단 인원의 5배수 미만일 경우 해당 소분류와 가장 유사한 기술분야(소분류)의 평가분야에 1순위 1→2군, 2순위 1→2군, 3순위 1→2군과 같은 순으로 예비후보를 추가·구성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절차 도식(예시)>



2) 구성된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순위를 부여하되, 먼저 구성된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순위를 부여하고, 그 순위에 이어서 추가로 구성된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순위를 부여하여야 함

<무작위 순위 부여순서>

- ① 1순위의 1군 → ② 1순위의 2군 → ③ 2순위의 1군 → ④ 2순위의 2군 →
- ⑤ 3순위의 1군 → ⑥ 3순위의 2군 →
- ⑦ 유사분야 1순위의 1군 → ⑧ 유사분야 1순위의 2군 → ⑨ 유사분야 2순위의 1군 →
- ⑩ 유사분야 2순위의 2군 → ⑪ 유사분야 3순위의 1군 → ⑫ 유사분야 3순위의 2군

다. 연구개발과제평가단

1) 사업단장은 후보단에서 구성한 예비후보를 부여된 순위에 따라 평가위원 위촉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과제별로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함.

- 평가단은 5인 이상 8인 이하로 구성하되, 산업계 1~3인 이내, 학계·연구계 4~7인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장관이 사업추진계획 또는 사업공고에 해당 내용을 명시한 경우 사업의 특성에 따라 그 구성·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
- 2) 단계평가부터는 해당과제의 직전평가에 참여했던 평가단의 평가위원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전 평가의 평균점수에 가장 근접한 평가위원부터 순위를 부여하고 그 순위에 따라 위촉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평가단을 구성함

3. 운영

- 가. 평가 진행의 공정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평가위원장을 위촉하여 평가를 진행 할 수 있음
- 나. 평가단에서 평가위원중 1인을 평가위원장으로 호선하며 평가위원장이 평가회의를 진행하되 평가에서는 배제함
- 다. 평가위원 불참 등으로 평가단이 6인 미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평가위원장을 호선하지 않음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예, 그 외의 경우' 일란에 [√] 표시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3.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5.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6.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7.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8.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9.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분류를 기재합니다.
10. 부처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분류를 기재합니다.
11.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12.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3. 연구개발기간:
 -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 2)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14.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이 지원·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5.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16.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위탁”으로 기재합니다.
17.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역할(공모 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 1)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합니다.
 - 2) 해당 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합니다.
 - 3)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합니다.
 - 4)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합니다.
 - 5) 그 외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18. 기관유형
 -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5) 「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 연”으로 기재합니다.
 -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8)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10)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 1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19.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20. 기관장 서명: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 요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사업명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농림식품 과학기술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전체 연구기간									
해당 단계									
총 연구개발비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천원, 지방자치단체: 천원, 그 외 지원금: 천원)							
해당 단계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천원, 지방자치단체: 천원, 그 외 지원금: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응용[] 개발[]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기술성숙도 (해당 시 작성)		착수시점 기준() 종료시점 목표()		
연구개발과제 유형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특성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전체 내용							
		1단계[]	목표						
			내용						
n단계[]	목표								
	내용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요약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3.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5. 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6. 총괄연구개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총괄연구개발명을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명을 기재합니다.
8.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9. 총 연구개발비(해당단계, 해당연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해당단계, 해당연도)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10.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합니다.
 - 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 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 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 4) 기타는 기초, 응용, 개발 등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1. 기술성숙도: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9단계 중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합니다(특정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만 작성).
 - 1)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 2)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 3) 시작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시범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 4) 제품화단계: 7단계(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 5) 사업화단계: 9단계(사업화)
12. 연구개발과제 유형: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자율적으로 구분한 유형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3. 연구개발과제 특성: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4.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6.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정량적·정성적 성과에 대하여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단계별로 연구개발성과 항목별 목표를 나타내는 표를 포함).
17.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시설·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

※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거나 항목의 순서와 구성을 변경하는 등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첨부자료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1.3)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항목은 2021.1.4.부터 2021.12.31.까지 수정 사용 가능합니다.

<연구개발성과 목표 대비 실적>

(단위 : 건수, 백만원, 명)

성과목표	사업화지표											연구기반지표								
	지식 재산권				기술 실시 (이전)		사업화				표준화		학술성과			교육지도	인력양성	정책 활용·홍보		기타 (타 연구 활용 등)
	특허출원	특허등록	SW 저작권	SMART	건수	기술료	제품화	매출액	수출액	고용창출	투자유치	국내	국제	논문				논문평균 IF	학술발표	
														SCI	비 SCI					
단위	건	건	건	평균등급	건	백만원	건	백만원	백만원	명	백만원	건	건	건	건	건	명	건	건	
가중치																				
최종목표																				
당해년도	목표																			
	실적																			
달성률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1) 연구수행 결과

(1) 정성적 연구개발성과

(2)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수정 가능합니다)

<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표(예시) >

(단위 : 건, 천원)

성과지표명	연도	1단계 (YYYY~YYYY)		n단계 (YYYY~YYYY)		계	가중치 (%)
		목표(단계별)	실적(누적)	목표(단계별)	실적(누적)		
전담기관 등록·기탁 지표 ¹⁾		목표(단계별)					
		실적(누적)					
		목표(단계별)					
		실적(누적)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²⁾		목표(단계별)					
		실적(누적)					
		목표(단계별)					
		실적(누적)					
계							

* 1) 전담기관 등록·기탁 지표: 논문[에스시아이 Expanded(SCIE), 비SCIE, 평균Impact Factor(IF)],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생명자원(생명정보, 생물자원), 표준화(국내, 국제), 화합물, 신제품 등을 말하며, 논문, 학술발표, 특허의 경우 목표 대비 실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2)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기술실시(이전), 기술료, 사업화(투자실적, 제품화, 매출액, 수출액, 고용창출, 고용효과, 투자유치), 비용 절감, 기술(제품)인증, 시제품 제작 및 인증, 신기술지정, 무역수지개선,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지원(기술지도), 교육지도, 인력양성(전문 연구인력, 산업연구인력, 졸업자수, 취업, 연수프로그램 등), 법령 반영, 정책활용, 실제 기준 반영,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기술무역, 홍보(전시), 국제화 협력, 포상 및 수상, 기타 연구개발 활용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과제 특성별로 고유한 성과지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성과 성능지표(예시) >

평가 항목 (주요성능 ¹⁾)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²⁾ (%)	세계 최고		연구개발 전 국내 성능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설정 근거
			보유국/보유기관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 (YYYY~YYYY)	n단계 (YYYY~YYYY)	
1								
2								

* 1)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이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3)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해당되는 항목만 선택하여 작성하되, 증빙자료를 별도 첨부해야 합니다)

[과학적 성과]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

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자명	호	국명	발행기관	SCIE 여부 (SCIE/비SCIE)	게재일	등록번호 (ISSN)	기여율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번호	회의 명칭	발표자	발표 일시	장소	국명

기술 요약 정보

연도	기술명	요약 내용	기술 완성도	등록 번호	활용 여부	미활용사유	연구개발기관 외 활용여부	허용방식

보고서 원문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 번호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번호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명	등록/기탁 번호	등록/기탁 기관	발생 연도

[기술적 성과]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제품, 프로그램)

번호	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별 각각 기재)	국명	출원				등록			기여율	활용 여부
			출원인	출원일	출원 번호	등록 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 번호		

○ 지식재산권 활용 유형

※ 활용의 경우 현재 활용 유형에 √ 표시, 미활용의 경우 향후 활용 예정 유형에 √ 표시합니다(최대 3개 중복선택 가능).

번호	제품화	방어	전용실시	통상실시	무상실시	매매/양도	상호실시	담보대출	투자	기타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번호	저작권명	창작일	저작자명	등록일	등록 번호	저작권자명	기여율

신기술 지정

번호	명칭	출원일	고시일	보호 기간	지정 번호

기술 및 제품 인증

번호	인증 분야	인증 기관	인증 내용		인증 획득일	국가명
			인증명	인증 번호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표준화
○ 국내표준

Table with 8 columns: 번호, 인증구분, 인증여부, 표준명, 표준인증기구명, 제안주체, 표준종류, 제안/인증일자

- * 1) 한국산업규격(KS) 표준, 단체규격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제안 또는 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신규 또는 개정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국제표준

Table with 11 columns: 번호, 표준화단계구분, 표준명, 표준기구명, 표준분과명, 의장단 활동여부, 표준특허 추진여부, 표준개발 방식, 제안자, 표준화 번호, 제안일자

- * 1) 국제표준 단계 중 신규 작업항목 제안(NP), 국제표준초안(WD), 위원회안(CD), 국제표준안(DIS), 최종국제표준안(FDIS), 국제표준(IS)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공동기술위원회1(JTC1)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제표준(IS), 기술시방서(TS), 기술보고서(TR), 공개활용규격(PAS), 기타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경제적 성과]

□ 시제품 제작

Table with 9 columns: 번호, 시제품명, 출시/제작일, 제작 업체명, 설치 장소, 이용 분야, 사업화 소요 기간, 인증기관 (해당 시), 인증일 (해당 시)

□ 기술 실시(이전)

Table with 7 columns: 번호, 기술 이전 유형, 기술 실시 계약명, 기술 실시 대상 기관, 기술 실시 발생일, 기술료 (해당 연도 발생액), 누적 징수 현황

□ 사업화 투자실적

Table with 6 columns: 번호, 추가 연구개발 투자, 설비 투자, 기타 투자, 합계, 투자 자금 성격*

- * 내부 자금, 신용 대출, 담보 대출, 투자 유치, 기타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사업화 현황

Table with 10 columns: 번호, 사업화 방식, 사업화 형태, 지역,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국내/국외), 매출 발생 연도, 기술 수명

-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매출 실적(누적)

Table with 5 columns: 사업화명, 발생 연도, 매출액 (국내/국외), 합계, 산정 방법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사업화 계획 및 무역 수지 개선 효과

성과					
사업화 계획	사업화 소요기간(년)				
	소요예산(천원)				
	예상 매출규모(천원)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시장 점유율	단위(%)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국내			
	국외				
	향후 관련기술, 제품을 응용한 타 모델, 제품 개발계획				
무역 수지 개선 효과(천원)	수입대체(내수)	현재	3년 후	5년 후	
	수출				

□ 고용 창출

순번	사업화명	사업화 업체	고용창출 인원(명)		합계
			yyyy년	yyyy년	
합계					

□ 고용 효과

구분			고용 효과(명)
고용 효과	개발 전	연구인력	
		생산인력	
	개발 후	연구인력	
		생산인력	

□ 비용 절감(누적)

순번	사업화명	발생연도	산정 방법	비용 절감액(천원)
합계				

□ 경제적 파급 효과

(단위: 천원/년)

구분	사업화명	수입 대체	수출 증대	매출 증대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인력 양성 수)	기타
해당 연도							
기대 목표							

□ 산업 지원(기술지도)

순번	내용	기간	참석 대상	장소	인원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기술 무역

(단위: 천원)

번호	계약 연월	계약 기술명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국가	기 징수액	총 계약액	해당 연도 징수액	향후 예정액	수출/수입

[사회적 성과]

□ 법령 반영

번호	구분 (법률/시행령)	활용 구분 (제정/개정)	명 칭	해당 조항	시행일	관리 부처	제정/개정 내용

□ 정책활용 내용

번호	구분 (제안/채택)	정책명	관련 기관 (담당 부서)	활용 연도	채택 내용

□ 설계 기준/설명서(시방서)/지침/안내서에 반영

번호	구분 (설계 기준/설명서/지침/안내서)	활용 구분 (신규/개선)	설계 기준/설명서/지침/안내서 명칭	반영일	반영 내용

□ 전문 연구 인력 양성

번호	분류	기준 연도	현황																			
			학위별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 산업 기술 인력 양성

번호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 기관	교육 개최 횟수	총 교육 시간	총 교육 인원

□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번호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 국제화 협력성과

번호	구분 (유치/파견)	기간	국가	학위	전공	내용

□ 홍보 실적

번호	홍보 유형	매체명	제목	홍보일

□ 포상 및 수상 실적

번호	종류	포상명	포상 내용	포상 대상	포상일	포상 기관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인프라 성과]
□ 연구시설·장비

구축기관	연구시설/ 연구장비명	규격 (모델명)	개발여부 (○/×)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여부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번호	구축일자 (YY.MM.DD)	구축비용 (천원)	비고 (설치 장소)

* 「과학기술기초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 밖의 성과](해당 시 작성합니다)

(4)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 분야 기여사항(해당 시 작성합니다)

<참고 1> 연구성과 실적 증빙자료 예시

성과유형	첨부자료 예시
연구논문	논문 사본(저자, 초록, 사사표기)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포함, 연구개발과제별 중복 첨부 불가)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등록증(또는 출원서) 사본(발명인, 발명의 명칭, 연구개발과제 출처 포함)
제품개발(시제품)	제품개발사진 등 시제품 개발 관련 증빙자료
기술이전	기술이전 계약서, 기술실시 계약서, 기술료 입금 내역서 등
사업화 (상품출시, 공정개발)	사업화된 제품사진, 매출액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매출 확인가능 내부 회계자료) 등
품목허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허가서
임상시험실시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서
교육지도	교육 실시 공문, 교육용 교재, 수료증, 농촌진흥청 심의회를 통과한 영농기술·정보 자료 등
정책활용	관련 공문 및 법령 제·개정(안) 내용, 정책활용 실적보고서, 농촌진흥청 심의회를 통과한 정책자료 등

<참고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및 별표 4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대상과 범위

구분	대상	등록 및 기탁 범위
등록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원문 포함)
	특허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원문
	연구시설·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부대비용 포함) 연구시설·장비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 모든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연차보고, 단계보고 및 최종보고가 완료된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을 요약한 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서열·발현정보 등 유전체정보, 서열·구조·상호작용 등 단백질체정보, 유전자(DNA)칩·단백질칩 등 발현체 정보 및 그 밖의 생명정보
	소프트웨어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기탁	표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표준,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공식 표준정보[소관 기술위원회 를 포함한 공식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가 공인한 단체 또는 사실표준화기구에서 채택한 표준정보를 포함한다]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미생물자원, 인간 또는 동물의 세포·수정란 등 동물자원, 식물세포·종자 등 식물자원, DNA, RNA, 플라스미드 등 유전체자원 및 그 밖의 생물자원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신품종	생물자원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 및 관련 정보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2) 목표 달성 수준

추진 목표	달성 내용	달성도(%)
○	○	○
○	○	○

4.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해당 시 작성합니다)

1) 목표 미달 원인(사유) 자체분석 내용

2) 자체 보완활동

3) 연구개발 과정의 성실성

5. 연구개발성과의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6.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표(예시) >

구분(정량 및 정성적 성과 항목)		연구개발 종료 후 5년 이내
국외논문	SCIE	매년 목표치
	비SCIE	
	계	
국내논문	SCIE	
	비SCIE	
	계	
특허출원	국내	
	국외	
	계	
특허등록	국내	
	국외	
	계	
인력양성	학사	
	석사	
	박사	
	계	
사업화	상품출시	
	기술이전	
	공정개발	
제품개발	시제품개발	
비임상시험 실시		
임상시험 실시 (IND 승인)	의약품	1상
		2상
		3상
	의료기기	
진료지침개발		
신의료기술개발		
성과홍보		
포상 및 수상실적		
정성적 성과 주요 내용		

7.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별지 제23호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8. 중요 연구변경 사항(해당 시 작성합니다)

구분 ¹⁾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및 조치사항	변경근거 ²⁾

* 1)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에서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문서번호 또는 승인일자 중에서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9.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

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2) 국내외 관련 분야 환경변화(해당 시 작성합니다)

3) 연구개발 추진전략

4) 연구개발 일정 및 기대 성과

5) 다음 단계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6) 사업화 추진 계획(해당 시 작성합니다)

7)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별첨 자료 >

중앙행정기관 요구사항	붙임(별첨) 자료
1. 공통요구자료	1) 기업 재무건전성 현황(기업에 한함)
	2) 0000년 연구장비에산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3) 0000년 연구장비에산심의요청서(1억원 이상)
	4) 현물부담확약서
	5) 정부출연연구개발비청구서
	6) 연구노트 점검 결과 보고서
2.	1)
	2)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본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연구개발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기술하며, 선정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와 최근에 제출한 「연차보고서」 또는 「단계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이론적·실험적 접근 방법, 연구 과정 및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 1) 연구수행 결과: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발생한 정성적 연구개발성과와 해당 시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분야 기여사항을 기재합니다.
 - (1) 정성적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발생한 해당 단계의 정성적인 성과 기재합니다.
 - (2)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개발성과표에서 목표 대비 해당 단계에서 발생한 실적을 기재합니다(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수정 가능).
 - (3)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과학적성과, 기술적성과, 표준화, 경제적성과, 사회적성과, 인프라성과, 그 밖의 성과 중 최종 발생한 성과항목이 있을 경우 선택적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 첨부, 등록·기탁 대상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과 등록·기탁 번호를 기재합니다.
 - (4)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 분야 기여사항: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해당 단계에서 계획하지 않은 성과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성과와 관련분야 기여사항을 기재합니다.
 - 2) 목표 달성 수준: 단계별 연구목표 및 평가 착안점에 입각한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 목표 대비 달성내용과 달성도(%)를 기재합니다.
1.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 해당 시 수행기관이 자체 분석한 목표 미달 원인(사유), 진도 상 미흡한 부분 등 문제의 원인과 자체 보완활동 및 대책에 대한 내용과 과제수행 과정의 성실성 등에 관하여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 현황과 비교하여 달성된 연구성과가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우월성, 기여한 점 등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성과 관리 추진체계와 예상되는 연구 성과의 활용분야, 활용방안, 추가연구의 필요성, 타 연구에의 응용, 기업화 추진방안, 기술 이전 등을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 해당 단계 종료일 기준 연구개발비 항목별 사용 금액을 별지 7호 연구개발비사용실적보고서 양식(작성일 기재)을 활용하여 총괄 및 연구개발기관별로 시스템 상 제출합니다.
5. 중요 연구변경 사항: 해당 시 당초 계획(연구개발계획서 기준) 대비 중요 변경사항(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비,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관 등)이 발생한 경우 협약변경 내용을 중심으로 기재합니다.
6.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 : 다음 단계 계획을 연구개발계획서상 내용으로 작성하고 변경 시 변경 전·후 비교표를 만들고 변경 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 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개발목표, 개발내용 및 범위를 기재하고 목표 및 내용이 변경 시 변경 전·후 비교표를 만들고 변경 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 2) 국내외 관련 분야 환경변화: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개발·기술·산업 동향 및 관련 정책·경쟁기술·지재권·표준화 현황과 당초 대비 환경 변화에 관한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연구개발계획서상 내용을 중심으로 쉽고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 3) 연구개발 추진전략: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재합니다(변경사항 없을 시 연구개발계획서상 내용을 중심으로 쉽고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 4) 연구개발 일정 및 기대성과: 추진일정과 그에 따른 기대성과를 간결하게 기재합니다(변경사항 없을 시 연구개발계획서상 내용을 중심으로 쉽고 간결하게 작성).
 - 5) 다음 단계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단계 혹은 연도별 사용계획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 6) 사업화 추진 계획: 연구개발과제 성과의 사업화 추진 계획이 있을 경우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 7)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기재하고,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을 기재합니다(변경사항 없을 시 연구개발계획서상 내용을 중심으로 쉽고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뒷면지]

주 의

1. 이 보고서는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한 스마트팜 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 ○○(과제명)연구개발과제 단계보고서이다.
2. 이 연구개발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문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재)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한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기업 재무건전성 현황(기업에 한함)

- ① 과제명 :
-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주관책임자) :
- ③ 기업명 : ○○○○

항 목	해당사항기재		
최근 결산 기준 부채비율 (산식 : 부채총계/자기자본총계×100)	○ 계산결과 : ○○% ○ 계산식 및 수치기재		
최근 결산 기준 유동비율 (산식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계산결과 : ○○% ○ 계산식 및 수치기재		
최근 결산 기준 이자보상비율 (산식 : 영업이익/이자비용)	○ 계산결과 : ○○% ○ 계산식 및 수치기재		
3개년도 계속 적자 기업(kisline활용) (판단기준 :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 (손실)로서 판단)	○		
	20 년	20 년	20 년
	(수치기재)	(수치기재)	(수치기재)
최근 결산 기준 자본잠식 여부 또는 법정관리, 화의기업 여부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 여부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 여부	○		
4대 보험을 3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연체 횟수가 연간 2회 이상인 여부	○		
체불 임금이 2개월 이상 여부	○		
기타 특이사항	○		

요약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참여하는 모든 기업이 각각 작성
2. 증빙 서류 제출
3.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기입

0000년 연구장비에산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연구시설·장비의 개요

구 분		내 용						
과제명								
시설장비명	한글	※ 연구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연구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담당자		소속	이름		연락처	이메일		
제조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취득방법 (해당란에 "○" 표시)		구 매	임 대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신청금액	'00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연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 - ※ 장비의 측정 목적, 피시험물, 취득하고자 하는 결과물 등 자세하게 기재						
		분석	시험	교육	계측	생산	기타	
		(해당란에 "○" 표시)					※ 직접기재	
주요사양		○ - ※ 제작사가 제공하는 주요 사양을 5가지 이상 기재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외산장비 도입 필요성		○ - ※ 제작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작성						

□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연구) 부합성	○ - ※ 신청 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의 중복성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연구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 계획 및 방법 작성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 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 (신규, 기존)</th> <th style="width: 20%;">성명 (채용예정자는 000)</th> <th style="width: 15%;">소속부서명</th> <th style="width: 20%;">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th> <th style="width: 15%;">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th> <th style="width: 20%;">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000)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000)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0000년 연구장비에예산심의요청서(1억원 이상)

I. 사업 개요

□ 사업 일반사항

부 처 명				
세부사업명	※ '00년 사업별 예산요구서상의 세부사업명을 기재			
회 계 명 (해당란에 "○" 표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기금일 경우 기금명 기재)	
사업분류 (해당란에 "○" 표시)	순수연구개발	연구시설·장비구축	연구개발기관지원사업	기 타(직접 기재)
부처 사업담당자	성명	직장전화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 내역사업 및 과제 목록(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단위 : 백만원)

순번	내역사업명 (“00년 사업별 예산요구서상의 내역사업명을 기재)	과제명	“00년 연구개발비		총연구기간	“00년 연구기간	“00년 해당년차 (차년도)
			정부지 원연구 개발비	기관부 담연구 개발비			
1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2							
3							

□ 과제별 연구책임자(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순번	과제명	“00년 시설장비 신청건수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직장전화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1							
2							
3							

< 참고 - 세부사업명 및 내역사업명 작성 예시 >

세부사업명 예시	내역사업명 예시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	세라믹종합지원센터 지원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구축
에너지자원융합원천기술개발	미래선도기술개발
	에너지효율향상
원예특작시험연구	온난화대응농업연구
	인삼특작시험연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주요사업비	기관목적사업(바이오 인프라 구축사업)
	창의연구사업
	시설비(시설보수 및 장비교체)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II. 0000년 연구시설·장비 구축 개요

□ 구축신청 시설장비 목록

(단위 : 백만원)

순번	과제명	시설장비명	총구축 비용	"00년 정부지원연 구개발비	비고 (매칭펀드, 분할납부, 임대 등 특이사항)
1		○○○			
2		□□□			
3		△△△			

- ※ 0000년 예산으로 구축예정인 1억원 이상 모든 연구시설·장비를 기재. 소프트웨어의 경우 장비 운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해당하며, 장비와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
- ※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시설장비일 경우 비고란에 자체부담금을 작성 요망
- ※ 시설장비 구축비용을 분할납부할 경우 비고란에 총금액과 연도별로 납부할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 ※ 임대일 경우 비고란에 구입할 경우 가격과 임대비용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별첨]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각 1부. 끝.

- ※ 구축신청 시설장비 목록상의 시설장비별로 구축계획서를 각각 작성 요망

[첨부-00]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 상기 “별첨-00”에서 별첨번호 00는 연구장비에산심의요청서의 “구축신청장비 목록”과 동일한 번호로 기재 요망

1. 연구시설·장비 개요

시설장비 분류

분류1(기술분야) (해당란에 "○" 표시)	기초과학	생명	해양	우주·천문	에너지	환경	기계부품소재	정보전자통신	
분류2(시설장비표준분류) (해당항목 선택)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3(사용용도) (해당란에 "○" 표시)	시험용	분석용	교육용	계측용	생산용	기타(직접기재)			
분류4(중점투자분야) (해당란에 "○" 표시)	주력기간산업기술 고도화		신산업 창출 핵심기술개발 강화		글로벌 이슈 대응 연구개발 추진		국가주도기술 핵심역량 확보		기초과학·융합 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분류5(활용목적) (해당란에 "○" 표시)	공동활용서비스 (Public Use)			공동활용허용 (Joint Use)			단독활용 (Private Use)		

예비타당성조사 여부, 사전기획 여부 및 수요조사 실시 여부

예비타당성조사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실시	미실시	사전기획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실시	미실시	수요조사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실시	미실시

※ 사전기획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사전기획보고서를 첨부 요망(5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필수 제출)

※ 수요조사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수요조사 결과를 첨부 요망

(공동활용 가능성이 높은 장비를 도출하고 장비 도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수요조사 실시)

해당기관 장비심의위원회 통과 내역(연구개발기관지원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시설장비만 작성)

심의일자	YYYY-MM-DD	심의결과 (인정/조건부인정/불인정)	
-------------	------------	-------------------------------	--

※ 연구개발기관지원사업은 해당기관의 "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연구시설·장비만 제출 가능. 증빙자료(심의결과) 첨부 요망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시설장비 구축 개요

구 분		내 용					
과제명							
시설장비명	한글	※ 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국산	대한민국					
	외산	미국					
취득방법 (해당란에 "○" 표시)	구 매	리 스1)	렌 탈2)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 (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	"00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금액(매칭 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년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 -						
주요사양	○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 견적서 필수 첨부(6개월 이내). 견적서는 장비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품명과 구성품별 금액을 구분하여 제시요망. 견적서에 장비 총금액만 제시할 경우 불인정. 입찰예정인 경우 업체별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 ※ "A System = (a 社 + b 社 + …)"로 구성되는 경우 각 제조사별 사양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작성하고, 각 제조사별 견적서를 반드시 첨부						

1) 리스 : 장기간 임대(소유권 : 임대인, 관리권・사용권 : 임차인)

2) 렌탈 : 단기간 임대(소유권・관리권 : 임대인, 사용권 : 임차인)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 중복성은 "NTIS 연구장비 중복성 검토(<http://red.nfec.go.kr>)"에서 중복성을 자체 검토한 후 중복성검토확인서 발급
- 중복성검토확인서 발행시 저장된 "대체가능장비 목록"을 아래 표에 작성하거나 엑셀 파일로 별도 제출

순번	장비명	제작사	모델명	취득 연도	취득 금액 (단위 : 백만원)	설치 기관명 (설치 지역)	지역 중복 여부 1)	공동 활용 여부 2)	장비 등록 번호 3)	신청기관의 자체검토 의견	검색 키워드
1	한글명									○ ※ 검색된 동일·유사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장비를 구축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를 기재 (차별성, 추가 수요에 따른 구축 필요성 등)	※NTIS 검색창에 입력한 텍스트
	영문명										
2											
3											
4											
5											
6											

※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http://nfec.ntis.go.kr>)에서 장비명(한글, 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유사장비를 검색

1) 지역중복여부 : 동일지역, 인근지역, 타 지역 중 택 1

- 동일지역 : 신청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한 지역 (17개 시·도 기준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장비인 경우. 구입수량이 여러 대여서 설치예정 지역이 여러 지역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지역이라도 동일하면 동일지역으로 기재
- 인근지역 : 신청한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지역은 아니지만, 동일광역권(5+2 광역경제권 기준)에 있는 장비인 경우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 세종, 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 : 대구, 경북
▶동남권 :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 강원	▶제주권 : 제주	

- 타 지역 : 동일지역, 인근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장비인 경우

- 2) 공동활용여부 : NTIS 검색 시 제공되는 "활용범위"란의 정보를 기재(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 3) 장비등록번호 : NTIS에 등록된 연구장비의 고유번호임 (예 : NFEC-2014-01-123456)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3. 시설장비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연구) 부합성	<p>○ -</p> <p>※ 신청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p>
국가전략적 필요성	<p>○ -</p> <p>※ 최근 수립된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NFRM),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계획, 소관 부처별 중·장기 R&D 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높은 장비인지 기술 ※ 신청장비를 활용하여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연구분야가 있어 국가위상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지, 확정된 연구개발 계획 또는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시급히 구축해야 하는 장비인지 기술</p>
연구장비의 중복성	<p>○ -</p> <p>※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 동일·유사장비가 있을 경우, 신청장비의 차별성과 추가적인 수요 등 동일·유사장비가 있더라도 추가로 구축해야하는 이유를 기술.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내용을 포괄하여 작성</p>
연구장비의 활용성	<p>○ -</p> <p>※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p>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p>연구장비의 적정성</p>	<p>○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p>												
<p>장비운영의 계획성</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 (신규, 기존)</th> <th style="width: 15%;">성명 (채용예정자는 000)</th> <th style="width: 15%;">소속부서명</th> <th style="width: 15%;">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th> <th style="width: 15%;">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th> <th style="width: 10%;">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p>○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을 위한 전문기술인력 확보방안을 기술하고,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표에 시설장비 전문기술인력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 - 전문기술인력은 시설장비에 대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장비의 운용을 통해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해석이 가능한 자료써, 연구자는 아니나 연구개발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전문기술인력의 제외 대상 ① 단순히 시설장비 구매, 장비일지 관리 등 행정적인 관리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② 학생, 행정조교, 교수 등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연구를 직접수행 또는 단순히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③ 연구자 중 시설장비를 개조·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④ 시설장비의 운용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 공작실 등에 근무하면서 시설장비의 수리 개조 등을 전담하는 인력 제외 - 5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전담인력이 필수 ※ 신규 채용예정자의 경우 SEE 장비사관학교의 인재찾기 서비스 지원 및 채용담당자 정보제공 ※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등록시 전문기술인력 정보를 함께 등록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p>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000)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000)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현물부담확약서

연구개발과제 「과제명 : _____」에 참여하면서 당사에서 부담하기로 한 현물을 아래와 같이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현물부담금액 : : 0000 천원 (차년도)

구 분			금액(천원)
인 건 비			000,000
기자재 및 재료비			000,000
품 명	단 가	수 량	세 부 금 액
00			000,000
00			000,000
00			000,000
총 계			000,000

* 매년 연차보고서 제출시 당해연차분 제출

20 . . .

참여기업 : (주) 00 대표이사 (직인)

연구노트 점검 결과 보고서

※ 주관·공동·위탁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자체 점검 후 작성·제출

1. 연구노트 관리 지침 제정·운영 현황

지침 제정여부	<input type="checkbox"/> 제정·운영 중 <input type="checkbox"/> 아직 미제정
미제정 시 사유	
제정 계획	

2. 연구노트 작성·관리 현황

참여연구원수	_____명
연구노트 작성	_____건
사고 유무	<input type="checkbox"/> 분실 (____건) <input type="checkbox"/> 미작성 (____건)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건)
사고 사유	
조치 사항	

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 . .

기관명 :

점검자 : (서명)

(재)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별지 2 >

단 계 평 가 서

평가일자: 20 . .

사 업 명		과제번호	
사업추진형태	<input type="checkbox"/> 지정공모과제 <input type="checkbox"/> 자유응모과제		
과 제 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책임자
단계 연구기간	~	(년 개월)	해 당 단 계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1. 종합평가(점수제)

구분	정량적평가(A)	정성적평가(B)	종합점수 {(A×0.2)+(B×0.8)}
취득점수			

2. 정량적 평가 : 정량적 연구성과목표의 달성도

성과지표	계획(A)	실적(B)	목표달성률 (C:B/A)	가중치(D)	점수 (C×D)
특허출원					
특허등록					
SW저작권					
기술이전 및 기술료					
...					
합 계					

※ 연구성과목표의 달성도(R&D연구마당 등록성과 기준)에 따라 평가(논문게재 건수는 평가에서 제외)

3. 정성적 평가

항 목	세 부 평 가 내 용	가중 치 (A)	점 수(B)	소계 (A×B)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내용 및 과정	1) 연구수행 범위 및 전략 타당성 • 연구범위와 내용의 타당성 • 사전에 수립된 전략대비 실행정도 • 다음 단계추진 전략의 타당성	1	0 1 2 3 4 5 _ _ _ _ _	
	2) 연구팀 구성의 적합성 • 연구팀의 전문적인 지식, 기술, 경험 등의 정도 • 관련기관 및 산업계, 타 연구주체와의 협력 노력	2	0 1 2 3 4 5 _ _ _ _ _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3) 계획의 준수도 • 연구일정 및 예산의 준수 정도 • 연구기자재의 확보 및 연구인력구성의 준수 정도	2	0 1 2 3 4 5 _ _ _ _ _	
	4) 목표의 단계 달성도 • RFP 준수도(연구내용 및 성과를 포함) • 제시된 연구목표를 추구하는 방향성 • 단계 및 초과달성한 성과의 질적 수준	3	0 1 2 3 4 5 _ _ _ _ _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5) 기술개발의 파급효과 • 농림축산식품 산업발전 및 농축산인 소 득증대 기여도 • 타 분야 연구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 해당 분야에서의 기술 축적성 • 타 분야 기술진보에의 기여도 • 연구개발결과의 영농현장 활용정도	2	0 1 2 3 4 5 _ _ _ _ _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6) 기술개발결과의 실용화 • 연구개발결과의 제품화 가능성 • 연구개발결과의 기술실시 가능성 • 실시기술의 시장성 및 사업성	3	0 1 2 3 4 5 _ _ _ _ _	
	7) 사업화 전략 추진의 구체성, 충실성 • 연구개발성과물에 대한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 사업화 계획 대비 예상 매출액 산정의 적정성 • (자체사업화 아닌 경우)기술이전 대상의 사업화 계획 적정성	3	0 1 2 3 4 5 _ _ _ _ _	
연구개발성과와 사업단 목표의 연계 정도 (해당하는 항목만 평가)	8) 연구개발 성과물 실증현황 및 계획 • 연구개발성과물에 대한 실증현황 및 계 획의 조건 적정성 • 연구개발성과물 실증현황·계획과 RFP상 제시된 실증목표와의 부합성 9)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정도 • 연구 데이터의 계획 대비 수집 이행 정도 • 데이터와 산출물의 검증 및 표준화 정도	4	0 1 2 3 4 5 _ _ _ _ _	
평가점수(A×B의 합계, 100점 만점) :			점	

4. 종합검토의견

가. 연구과제의 유사·중복성 검토의견

나. 종합적 조치

- 계속수행으로 평가(60점 이상인 경우) 시 연구수행에 꼭 필요한 사항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 중단으로 평가(60점 미만인 경우) 시 그 이유를 서술하여 주십시오.

· 단계평가결과에 따라 연구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일 경우 과제중단, 참여제한 및 제재부
가금 부과 가능

- 연구수행의 성실성(성실수행 불성실 수행)

※ 연구계획서상의 연구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연구방법·과정이 체계적이지 않은 경우

· 평가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극히 불량) 반드시 연구수행의 성실 여부를 평가하여야 함

평가서 작성상의 참고사항

- 계속수행 : 당초의 계획대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계속적인 연구 및 연구개발비 지원이 필요한 과제
- 우수(평균점수가 90점 이상), 보통(평균점수가 70점 이상 ~ 90점 미만) 및 미흡(평균점수가 60점
이상 70점 미만)으로 평가된 과제

- 중단 : 극히 불량(평균점수가 60점 미만)으로 평가된 과제

< 별지 2의 1 >

단 계 평 가 서

(재평가용)

평가일자: 20 . .

사 업 명		과제번호	
사업추진형태	<input type="checkbox"/> 지정공모과제	<input type="checkbox"/> 자유응모과제	
과 제 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책임자
단계연구기간	~ (년 개월)	해 당 단 계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1. 정성적 평가(점수제)

항 목	세 부 평 가 내 용	가중 치 (A)	점 수(B)	소계 (A×B)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내용 및 과정	1) 연구수행 범위 및 전략 타당성 • 연구범위와 내용의 타당성 • 사전에 수립된 전략대비 실행정도 • 다음 단계추진 전략의 타당성	1	0 1 2 3 4 5 _ _ _ _ _	
	2) 연구팀 구성의 적합성 • 연구팀의 전문적인 지식, 기술, 경험 등 의 정도 • 관련기관 및 산업계, 타 연구주체와의 협력 노력	2	0 1 2 3 4 5 _ _ _ _ _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3) 계획의 준수도 • 연구일정 및 예산의 준수 정도 • 연구기자재의 확보 및 연구인력구성의 준수 정도	2	0 1 2 3 4 5 _ _ _ _ _	
	4) 목표의 단계 달성도 • RFP 준수도(연구내용 및 성과를 포함) • 제시된 연구목표를 추구하는 방향성 • 단계 및 초과달성한 성과의 질적 수준	3	0 1 2 3 4 5 _ _ _ _ _	

<p>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p>	<p>5) 기술개발의 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식품 산업발전 및 농축산인 소득증대 기여도 • 타 분야 연구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 해당 분야에서의 기술 축적성 • 타 분야 기술진보에의 기여도 • 연구개발결과의 영농현장 활용정도 </p>	<p>2</p>	<p>0 1 2 3 4 5 _ _ _ _ _ </p>	
<p>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p>	<p>6) 기술개발결과의 실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결과의 제품화 가능성 • 연구개발결과의 기술실시 가능성 • 실시기술의 시장성 및 사업성 </p>	<p>3</p>	<p>0 1 2 3 4 5 _ _ _ _ _ </p>	
	<p>7) 사업화 전략 추진의 구체성, 충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성과물에 대한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 사업화 계획 대비 예상 매출액 산정의 적정성 • (자체사업화 아닌 경우)기술이전 대상의 사업화 계획 적정성 </p>	<p>3</p>	<p>0 1 2 3 4 5 _ _ _ _ _ </p>	
<p>연구개발성과와 사업단 목표의 연계 정도 (해당하는 항목만 평가)</p>	<p>8) 연구개발 성과물 실증현황 및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성과물에 대한 실증현황 및 계획의 조건 적정성 • 연구개발성과물 실증현황·계획과 RFP상 제시된 실증목표와의 부합성 <p>9)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데이터의 계획 대비 수집 이행 정도 • 데이터와 산출물의 검증 및 표준화 정도 </p> </p>	<p>4</p>	<p>0 1 2 3 4 5 _ _ _ _ _ </p>	
<p>평가점수(A×B의 합계, 100점 만점) :</p>				<p>점</p>

4. 종합검토의견

가. 연구과제의 유사·중복성 검토의견

나. 종합적 조치

- 계속수행으로 평가(60점 이상인 경우) 시 연구수행에 꼭 필요한 사항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 중단으로 평가(60점 미만인 경우) 시 그 이유를 서술하여 주십시오.

· 단계평가결과에 따라 연구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일 경우 과제중단, 참여제한 및 제재부
가금 부과 가능

- 연구수행의 성실성(성실수행 불성실 수행)

※ 연구계획서상의 연구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연구방법·과정이 체계적이지 않은 경우

· 평가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극히 불량) 반드시 연구수행의 성실 여부를 평가하여야 함

평가서 작성상의 참고사항

- 계속수행 : 당초의 계획대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계속적인 연구 및 연구개발비 지원이 필요한 과제
 - 우수(평균점수가 90점 이상), 보통(평균점수가 70점 이상 ~ 90점 미만) 및 미흡(평균점수가 60점 이상 70점 미만)으로 평가된 과제
- 중단 : 극히 불량(평균점수가 60점 미만)으로 평가된 과제